

## 학생생활관 관생생활 수칙

**제1조(목적)** 수칙은 학생생활관 관생들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학생생활관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내생활)** 관생은 학생생활관내의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, 특히 사내에서는 폭언, 음주, 흡연, 도박, 그리고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4조(공용물사용)** 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와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물품 및 집기의 이동을 금한다.

③ 사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열기구(전열기구, 난로)의 사용을 금한다.

**제5조(보건과 위생)**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
**제5조의 2(화재대피훈련 의무참석)**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중에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<신설 2022.1.24>

**제6조(생활관 출입과 외박)** ① 사생은 생활관장, 팀장,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.<개정 2022.1.24>

② 관생은 당일 00:00시부터 다음날 05:00시 사이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16.11.17.><개정 2022.1.24>

③ <삭제 2016.11.17>

**제7조(면회)** ① 면회시간은 09:00 - 22:00까지로 한다.

② 사행 면회자는 관리과, 사감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서만 면회를 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생증)** <삭제 2016.11.17>

**제9조(관실배정)** ① 관실의 배정은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.<개정2007.09.01.><개정 2016.11.17>

② 관생은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2007.09.01>

**제10조(금지행위)** 관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사내에서 음주, 폭행, 도박행위 및 화투, 카드놀이
2. 가무 및 악기연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발생행위
3. <삭제 2016.11.17>
4. 생활관 출입 통제시간에 사내 이탈 또는 귀사
5.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및 보관
6. 전열기구 또는 기타 열기구의 사용(드라이어, 스탠드, 소형카세트, 컴퓨터 제외)
7. 외부인에 대한 숙박 제공
8. 내의, 잠옷 및 맨발 차림의 식당 출입이나 복도 통행
9. 생활관 내에서의 흡연
10.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
11. 허가 없이 집회하는 행위
12.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**제11조(점검 및 통신)** ① 생활관장이나 사감, 기타 관계직원은 실내의 정돈상태나 비품 보존상태,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

- ② 관생은 관계 교직원의 점검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관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, 모든 공지문은 게시 후 3일이 경과하면 모든 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숙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.<신설 2016.11.17>
- ④ 관생이 관내에 공고게시 및 문서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경유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6.11.17>
- ⑤ 개인 우편물 및 택배는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<신설 2016.11.17>

**제12조(징계 및 적용)** ① 학생생활관 규정 위반한 생활관생에게는 벌점 부여 및 퇴사처분을 하며 이는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 적용하고 제 2항의 기준에 의한 퇴사처리 자는 기숙사 납부금을 반환하지 않으며,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에도 입관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.<개정 2022.1.24>

②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항	내 용	벌 점	적 용
1	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자	퇴 사	
2	화재 유발자	퇴 사	
3	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(6점)	퇴 사	
4	전염병에 감염된 자	퇴 사	
5	기타 기숙관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	퇴 사	
6	기숙사 밖의 사람을 사감의 허락 없이 출입시킨 자	퇴 사	
7	다른 사람의 방에 사감의 허락 없이 출입한 자	3 점	2회 퇴사
8	사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품을 사용한자	3 점	2회 퇴사
9	공공기물을 파손한 자	3 점	2회 퇴사
10	화재 위험물질을 기숙사내에 들여온 자	3 점	2회 퇴사
11	흡연, 음주, 고성방가, 소란, 기타 경범에 속하는 행위를 한 자	3 점	2회 퇴사
12	기숙사 규정시간을 까닭 없이 지키지 않은 자	3 점	2회 퇴사
13	물품의 무단 이동과 가공 행위	2 점	3회 퇴사
14	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 전시, 배포행위	2 점	3회 퇴사
15	지시사항 불이행 자	2 점	3회 퇴사
16	사내 취사와 식사도구 보관	1 점	6회 퇴사

<표개정 2016.11.17.><표개정 2022.1.24>

부 칙(2000. 3. 2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1. 1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1. 1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. 2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